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안 수정안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관장) ----- 관장을 두되 사회 복지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.	제3조(관장) ----- 관장을 둘 수 있다.
제5조(시설의 사용) ①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 ----- 1. -----동반하는 가족 2. 부산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3. (생략)	제5조(시설의 사용) 회관을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는 자 ----- 1. ----- 동반하는 자 2. <삭 제> 2. (제정안 제3호와 같음)
제7조(사용료의 징수) ② 사용료는 [별표1]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자가 시중은행에 납부한다.	제7조 (사용료의 징수) ② 사용료는 [별표1]과 같다.
제8조(수수료의 징수) ② 수수료는 [별표2]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하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.	제8조(수수료의 징수) ② 수강수수료는 [별표2]와 같다.
제12조(사용료·수수료의 반환)①----- -----구의 행사----- ----- ② ----- 4. (생략) 5. (생략)	제12조(사용료·수수료의 반환)① ----- ----- <삭 제> ----- ----- ② ----- 3. (제정안 제4호와 같음) 4. (제정안 제5호와 같음)

부산광역시사하구사하여성회관운영조례

【별표 2】

제 정 안	수 정 안
(제목) 이용수수료	(제목) 수강수수료